특수건물의 범위

특수건물이란 서울특별시·부산직할시·대구직할시·인천직할시·광주직할시·대전직할시·전주시·울산시·부천시·수원시·성남시 등 11개 도시에 소재한 건물 중 다음 용도의 건물을 말한다.

이들 건물은 대부분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사용하고 있으며, 구조나 면적상 대규모이기 때문에 건물 자체의 재산적 가치가 크고 많은 물건 등을 수용하고 있다. 또한 시장·호텔·유흥접객업·공장 등은 화재의 위험 요인이 많고 화재 발생시 막대한 재산손실은 물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국유건물

국유재산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부동산 중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및 이 건물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 건물.

－국유건물은 국가가 소유하는 건물로서 국가재산법상의 건물을 지칭하며, 1동 건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즉,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물과 이 건물과 동일한 용도에 제공되는 건물은 물론, 주된 건물의 용도를 기능적, 구조적으로 촉진 또는 보완하는 부속 건물도 포함된다.

● 학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학원으로 사용하는 부문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① 이 법에서 학원이라 함은 사인이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 과정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 장소로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자연인·법인을 지칭하며 법인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불문하며, 자연인은 내국인이나 외국인을 불문한다.

1. 교육법 기타 법령에 의한 학교
2. 도서관 및 박물관
3.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4.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 교육 시설
5. 사회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부설한 시설
6.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 시설, 기타 사회 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 의료시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

① 의료인이 공중 또는 특정 다

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법이라 함)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소로 나눈다. 그러나 의료 시설의 범위가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수인의 환자가 치료 또는 입원을 하고 있어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가 클 것이 예상되는 종합병원 또는 병원으로 사용하는 건물만을 특수건물로 지정하였다.

②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 환자 8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과목이 적어도 내과·일반외과·소아과·산부인과·방사선과·마취과·병리과·정신과 및 치과가 설치되어 있고 각 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 기관을 말한다.

③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각각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 환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다만, 치과병원의 경우에는 그 입원 시설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호텔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호텔업으로 사용하는 건물.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에서는 숙박업을 호텔업,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여관업, 여인숙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중 규모가 크고 화재시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호텔업으로 사용되는 건물 즉, 호텔을 특수건물로 지정한 것이다.

● 공연장

공연법 제2조제3항에 규정한 공연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① 여기서 공연이라 함은 영화, 연극, 음악, 무용 기타 예술적 또는 오락적 관람물(운동이나 그 경기는 제외)을 공중의 관람 또는 청문(방송에 의한 청문을 제외)에 이바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에 제공되는 장소 및 시설로서 극장, 영화관, 연예장 등이 대표적이다.

● 영화 또는 텔레비전 촬영소로 사용하는 건물 및 방송시설로 사용하는 건물

● 옥내판매장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어느 건물 중 옥내판매장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건물 전체가 특수건물로 취급된다. 이때, 옥내판매장의 범위에는 반드시 상품을 진열하고 판매하는 장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판매를 촉진 또는 관리를 위한 장소 즉, 상품의 보관소 또는 사무실이 인접해 있다면 옥내판매장의 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도·소매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시장·대형점·대규모 소매점 및 도매센터로 사용하는 건물

① 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의 건물 또는 지하도에 설치된 다수의 점포시설에서 도·소매업자 및 이를 지원하는 용역업자가 계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② 대형점이라 함은 도·소매업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점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③ 대규모 소매점이라 함은 일정 구역안의 건물에서 소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 체제를 갖추고 직영 또는 임대의 형태로 상품을 소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④ 도매센터라 함은 일정 구역

안의 건물에서 도매업자가 근대적인 시설과 운영 체제를 갖추고 상품을 도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영업장을 말한다.

● 유흥접객업

식품위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유흥접객업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이 경우에 2 이상의 업종이 같은 건물내에 있는 경우에 그 연면적은 2 이상의 업종에 대한 면적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유흥접객업 ; 유흥종사자를 두고 주류 및 음료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일반 유흥접객업－유흥접객원을 두고 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 등

○ 무도 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 외국인 전용 유흥접객업－외국 군인 및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유흥접객업과 무도 유흥접객업

여기서 유흥종사자는 유흥접객원, 댄서, 가수나 악기를 다루는 자, 무용을 하는 자,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유흥사회자를 말하며,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부녀자를 말한다.

● 학교건물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 건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사단법인 학교재해복구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것은 제외한다.

－학교의 종류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대학·사범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각종 학교를 말한다. 여기서 특수학교는 시청각 장애자 등 심신장애자에게 유치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준한 교육과 그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가르치는 학교를 말한다.

● 아파트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아파트

공동주택의 종류 중 아파트를 특수건물으로 지정하였음

○ 아파트 ; 5층 이상의 주택

○ 연립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4층 이하의 주택

○ 다세대주택 ;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4층 이하의 주택

● 공장건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물

① 공장이라 함은 제조업(물품의 가공·조립·수리업을 포함한다)의 물품 제조공정(가공·조립·수리공정을 포함)을 형성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이나 사업장으로서 가공·조립·수리시설을 포함하는 제조시설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용지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

② 부대시설의 범위

○ 사무실·창고·경비실·전망대·주차장·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 수조·저유조·싸이로 및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 송유관·옥외주유시설·급배수시설 및 변전실

○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

○ 시험 연구시설 및 에너지 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 공동 산업 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 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 6층 이상의 건물

6층 이상의 건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 다만, 창고 및 주차 전용 건물과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행하는 공제 중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험과 같은 정도의 손해를 보상하는 공제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은 제외한다.

〈편집실〉